

내무국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995. 12

내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개 요	707
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총규모	707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708
2)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709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710
다. 내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711
2. 검토 의견	712
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712
나. 내무국소관 세출예산안	713

1. 개요

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액	(%)	금액	(%)	금액	(%)
합계	770,356	100	774,481	100	△4,125	△0.5
지방세	136,005	17.7	136,005	17.6	-	-
세외수입	145,305	18.9	144,952	18.7	353	0.2
경상적세외수입	10,662	1.4	10,662	1.4	-	-
임시적세외수입	134,643	17.5	134,290	17.3	353	0.3
지방교부세	162,096	21.0	160,296	20.7	1,800	1.1
지방양여금	46,943	6.1	46,943	6.1	-	-
보조금	162,445	21.1	159,043	20.5	3,401	2.1
지방재원	117,562	15.3	127,242	16.4	△9,680	△7.6

- '95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744억8천1백만원 대비 0.5%인 41억2천5백만원이 감액된 7,703억5천6백만원 규모임.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611,537	100	616,510	100	△4,973	△0.8
지 방 세	136,005	22.2	136,005	22.1	-	-
세 외 수 입	51,668	8.4	51,668	8.4	-	-
경상적세외수입	10,662	1.7	10,562	1.7	-	-
임시적세외수입	41,006	6.7	41,006	6.7	-	-
지 방 교 부 세	162,096	26.5	160,296	26.0	1,800	1.1
지 방 양 여 금	46,943	7.7	46,943	7.6	-	-
보 조 금	148,763	24.3	145,856	23.7	2,907	2.0
지 방 재 원	66,062	10.8	75,742	12.3	△9,680	△12.8

○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165억1천만원

대비 0.8%인 49억7천3백만원이 감액된 6,115억3천7백만원 규모임.

2)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액	(%)	금액	(%)	금액	(%)
합계	158,819	100	157,971	100	848	0.5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93,637	59.0	93,284	59.1	353	0.4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93,637	59.0	93,284	59.1	353	0.4
지방교부세	-	-	-	-	-	-
지방양여금	-	-	-	-	-	-
보조금	13,682	8.6	13,187	8.3	495	3.8
지방재원	51,500	32.4	51,500	32.6	-	-

○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579억7천1백만원

대비 0.5%인 8억4천8백만원이 증액된 1,588억1천9백만원 규모임.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611,537	100	616,510	100	△4,973	△0.8
인 건 비	42,195	6.9	43,069	7.0	△874	△2.0
물 건 비	32,757	5.4	32,692	5.3	65	0.2
이 전 경 비	123,893	20.3	122,084	19.8	1,809	1.5
자 본 지 출	386,261	63.2	393,545	63.8	△7,284	△1.9
용자 및 출자	7,678	1.3	7,678	1.2	-	-
보 전 재 원	1,815	0.3	1,815	0.3	-	-
내 부 거 래	8,156	1.3	6,463	1.0	1,692	26.2
예비비 및 기타	8,782	1.4	9,163	1.5	△381	△4.2

○ '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165억1천만원 대비 0.8%인 49억7천3백만원이 감액된 6,115억3천7백만원 규모임.

다. 내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104,654	100	111,279	100	△6,625	△5.9
인 건 비	702	0.6	702	0.6	-	-
물 건 비	3,638	3.5	3,597	3.3	41	1.1
이 전 경 비	67,687	64.7	67,601	60.7	86	0.1
자 본 지 출	32,533	31.1	39,285	35.3	△6,752	△17.2
용 자 및 출 자	94	0.1	94	0.1	-	-
보 전 제 원	-	-	-	-	-	-
내 부 거 래	-	-	-	-	-	-
예 비 비 및 기 타	-	-	-	-	-	-

- 내무국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046억5천4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112억7천9백만원에 비하여 5.9%인 66억2천5백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 도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115억3천7백만원에 비하여는 17.1%의 비중을 점하고 있음.

2. 검토의견

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9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744억8천1백만원 대비 0.5%인 41억2천5백만원이 감액된 7,703억5천6백만원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49억7천3백만원이 감액된 6,115억3천7백만원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억4천8백만원이 증액된 1,588억1천9백만원 규모임.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자원 증감내용으로는

- 지방교부세 18억원
- 보조금 29억7백만원 으로
- 지정재원 △96억8천만원 으로

이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와 증액교부금사업인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및 '95 수해복구사업과 여권발급사무를 비롯한 57건의 국고보조금 사업과 지정재원에 있어서 기타재산매각 및 '94 축산물 유탄 잔류물질 검사장비 구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기금수입 사업과 노인 승차권 배상액 시.군부담금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감액요인으로는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매각에 있어 보상시기 및 계획의 여건변화로 인해 감액 계상된데 기인함.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8억4천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 세외수입 3억5천3백만원
- 보조금 4억9천5백만원 으로

이는 의료보호기금의 사업외 수입전입금인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잡수입인 시.군결산반환금과 국고보조금의 증액분이 계상된 것으로 사료됨.

나. 내무국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1995년도 내무국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과 일반문예진흥차원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지역문화 가족향토문화유적답사 및 향토유적관리차원의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인 음성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단양 수양개유적발굴조사 및 도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과 체육진흥 및 체육단체지원 사업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여짐.

이러한 역점사업을 추진하기위한 급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112억 7천9백만원에 비하여 5.9%인 66억2천5백만원이 감액된 1,046억5천4백만원 규모로서

○ 이의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 기본적경비에 있어

· 물건비 4천1백만원 (1.1%증)

· 이진경비 8천6백만원 (0.1%증) 이며

- 사업비에 있어서

· 자본지출 67억5천2백만원 (17.2%감) 으로

편성되고 있음.

○ 이를 세분하여 분석해보면

첫째, 물건비 36억3천8백원은 기정예산액 35억9천7백만원에 비해 1.1%인 4천1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정부부지사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와 주요업무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및 주요업무추진비 1천3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백만원, 국내여비 7백만원, 급량비 1백만원, 차량선박비 4백만원, 일반수용비 1천만원으로 정부부지사의 임명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관서운영 및 기타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확보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둘째, 이전경비 676억8천7백만원은 기정예산액 676억1백만원에 비해 0.1%인 8천 6백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 예산기능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 4천9백만원
- 지방청사정비기금 조성 2천2백만원
- 지역문화 가족향토문화 유적답사 5백만원
-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3천만원
- 매장 문화재 지표조사(음성) 1천5백만원
- 단양수양개유적발굴 조사 2천3백만원
- 도무형문화재 진송지원 2백만원 으로

이는 출연금 및 문화예술킨흥 사업과 향토유적관리를 위한 민간경상보조와 가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서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산이나 출연의 필요성과 문화재관리 사업에 관한 조사계획등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할 것으로 시료됨.

셋째, 자본지출 325억3천3백만원은 기정예산액 392억8천5백만원에 비해 17.2%인 67억5천2백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 예산기능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 휴대폰 청약 및 구입비(정부부지사) 2백만원
- 전자복사기 및 다기능사부기기 구입 등 7백만원
- 도지사, 도의원 선거경비 지원 △10억원
- 정부부지사실 및 정책보좌관실 집기구입 1천만원
- 대체재산 조성 △59억9천6백만원
- 문화동 관사 배란다 및 실내정비 보수 2천5백만원
- 체육회관 건립비 2억원 으로

이는 정부부지사 임명에 따른 필요장비 및 비품 구입비와 지사관사의 노후시설물

에 대한 정비보수를 위한 예산과 체육회관 건립비 예산으로서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체육회관 건립지원금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설명
이 필요하다고 사료됨.